

산업보건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

〈산업보건〉은 독자들의 관심과 참여로 성장합니다. 근로 공간이나 산업 현장 또는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위험 요소 등을 포착해 보내주시면, 함께 공유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.

마감일 | 매달 20일 보내실 곳 | bearkhj@kiha21.or.kr
담당자 | 대외홍보팀 김효진 과장 ☎ 02-2046-0417



4월의 공유 현장

강태선(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, 교수)님이 보내주신 사진입니다.

올해 들어 처음 카센터를 방문하니 눈에 띄는 게 있었다. 메탄올 워셔액이 금지되었다는 안내문이었다. 기억난다, 그 방송. 외기 유입 상태에서 메탄올 워셔액을 사용하면 차량 내부에 일시적으로 고농도 메탄올 증기가 조성된다는 보도였다. 금지 근거를 찾아보니 화평법 제34조 제1항 관련 고시 개정에 따른 조치였다. 내용은 워셔액에 메탄올은 0.6% 이하로 함유되어야 한다는 것이었고, 시행 시점은 2018년 1월 22일이다. 흡입노출을 우려한 방침인데, 목적인 그 위험가 용도를 금지할 만큼 치명적인지 회의적이었다. 그보다는 자주 발생하는 워셔액 음독사고의 피해 규모를 줄이는 데 기여해야 할 것 같다.

이러한 개정 조치는 ‘메탄올 실명 사고’로 기억되는 노동자 실명 사건에 의한 것인데, 그 사고가 꼭 메탄올에 의해서만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다. ‘CNC기계+불법과건(일시적 장시간 노동)’과 ‘절삭유로 사용된 메탄올’의 조합을 원인으로 봐야 한다. 워셔액 메탄올만 ‘구속’된 것 같아서 그다지 반갑지 않다. ☹



「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제1항에 따른 「위험우려제품의 등록 및 안전 표시법」 고시 [별표2] <중략>

5. 자동차용 워셔액(Windshield washer fluids for automobiles)

5.1. 적용범위

이 기준은 자동차용 워셔액의 안전요건, 시험방법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. 자동차용 워셔액이란 자동차용세정액, 일반 유리를 세척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화합물을 말한다.

5.2. 용질

적용되는 용질은 다음 표1과 같이 구분된다.

<표1> 자동차용 워셔액 종류

수상액	워셔액(알코올), 워셔액(알코올)
기타	워셔액 등

중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주선정보로 사용된 워셔액, 알코올을 제외한 알코올을 주성분으로 사용된 워셔액에 실려진 성분 통틀어 필수기타가 있는 워셔액을 의미한다.

5.3. 안전기준

5.3.1.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: 표2 및 표3에 시험하였을 때 표2의 기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

<표2> 물질별 허용기준

물질명	기준치(%)
메탄올	0.6 이하

5.3.2. 안전표구세탁 자동차용 워셔액의 안전요건은 알코올 및 부속하는 이황화 황유화제 같은 공업용 액체를 하고 한시한 범시가 나가는 것으로 표3에 적용하여야 한다.